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역무 장애 고지의무의 법률 상향 규정 등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6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기통신역무 장애 고지의무의 법률 상향 규정	2
2. 전기통신역무 장애 시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조정 ..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Ⅲ. 검토의견

1. 전기통신역무 장애 고지의무의 법률 상향 규정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장애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인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손해배상) ① (생략)	제33조(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제1항¹⁾에서는 고지대상과 고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② 대응조치 현황, ③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동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장애 시 통지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 개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령보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임.
- 또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²⁾을 감안할 때, 통신 장애 시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장애 발생 시 고지해야 할 내용은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고지 의무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고지내용과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규제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며,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태생적 차이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2)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률과 시행령 조항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의 과실 없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 종합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역무 장애 고지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 등을 감안할 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전기통신역무 장애 시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조정

전기통신역무 장애 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3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 ----- -----. ----- ----- ----- ----- -----.

현행	개정안
1. ~ 4의7. (생략)	1. ~ 4의7.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u>	<삭제>
6. ~ 17. (생략)	6. ~ 17.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04조제5항제5호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책임감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 미고지 등에 대

3)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중소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시 기술적·운영적인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수준>

과태료 수준	법률조항	위반사항
5천 만원 이하	제104조제1항	-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 관련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3천 만원 이하	제104조제2항	-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등
2천 만원 이하	제104조제3항	-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등

과태료 수준	법률조항	위반사항
1천500만원 이하	제104조제4항	-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1천만원 이하	제104조제5항	-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다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 관련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등에게 부과되는 5천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 부가통신역무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역무도 존재하므로 전기통신역무 중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⁴⁾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2호⁵⁾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 제33조제2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중단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감독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인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 주체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 감독 기관과 과태료 부과 기관을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비스 중단

-
-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시 부과 가능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5배로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 종합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역무 장애 시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수준을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